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9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과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8568호)	윤준병의원	2025.2.28.	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 회의(2025.4.23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9742호)	정희용의원	2025.4.11.	제426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 회의(2025.6.23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9.29.)

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
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9.30.)

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

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
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
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
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(안 제24조),

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
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
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,
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
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).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(제2조제9호의 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)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 중 “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자료의 제공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8조의2(자료의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(제2조제9호의 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)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	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
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
제24조(구명조끼 등의 착용)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<u>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</u> 해양수산	제24조(구명조끼 등의 착용) ① - ----- <u>외부에</u> <u>노출된 갑판에 있는</u> ----- -----

<u>부령으로 정하는</u>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 끼 또는 구명 의(救命衣)를 착용 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생 략)	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